#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1413 거절결정(특)

원 고 세메스 주식회사

피 고 특허청장

변 론 종 결 2016. 7. 6.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1. 27. 2015원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명칭이 '기판 처리 장치'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6.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12가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7 내지 12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2. 24.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5, 9, 11, 12가 아래의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출원명세서 중 식별번호 [0055] 부분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2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8. 25.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5. '2차 의견제출통지에 기재한 거절이유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15. 1. 5. 특허심판원 2015원30호로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27.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 1) 발명의 명칭: 기판 처리 장치
-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2012. 7. 6./2012. 3. 30./제10-2012-0074122호

##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 또는 평판 표시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 등과 같은 기판에 대해 세정 또는 건조 등과 같은 공정을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0001]), 약액<sup>1)</sup> 처리시 발생되는 품<sup>2)</sup>의 외부 유출 억제가 가능하고, 품에 의한 회수통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판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4], [0005]).

본 발명은 내부에 기판을 세정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처리 용기(100); 상기 공간 내에 제공되고,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 지지 부재(200); 상기 기판 지지 부재에 놓여지는 기판으로 복수의 처리액을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분사 부재(300)를 포함하되; 상기 처리용기는 상기 공간 내 처리액이 유입되는 입구가 상하 방향으로 적층된 복수의 회수통(110, 121~123); 상기 복수의 회수통 전체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제1승강부재(130); 및 상기 복수의 회수통 중 일부의 회수통을 나머지 회수통에 대해 상하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는 제2승강부재(140)를 포함하는 기판 처리 장치이다(식별번호[0007], 도3).

## 5) 청구범위(2014. 8. 25. 보정된 것)

### 【청구항 1】

내부에 기판을 세정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처리 용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공간 내에 제공되고,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 지지 부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기판지지 부재에 놓여지는 기판으로 복수의 처리액을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분사 부재(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처리 용기는 상기 공간 내 처리액이 유입되는 입구가 상하 방향으로 적층된 복수의 회수통(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복수의 회수통 전체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제1 승강부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복수의 회수통 중 일부의 회수통을 나머지 회

<sup>1)</sup> 약액(藥液, liquid chemical): 물로 엷게 하여 살포하는 약제의 총칭(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sup>2)</sup> 품(fume): 액체의 승화, 액체의 증발, 화학 반응 등에 의해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나 가스 속에 부유하여 응결하게 된, 입자 지름 1μ 이하의 고체입자(네이버 지식백과, 환경공학용어사전).

수통에 대해 상하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는 **제2승강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2승강부재는 상기 제1승강부재에 고정결합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제1승강부재는 **제1구동기**(이하 '구성요소 5-1'이라 한다); 상기 제1구동기의 상부에 제공되며 상기 처리용기의 외벽에 결합되는 **제1브래킷**<sup>3)</sup>(이하 '구성요소 5-2'라 한다); 및 상기 제1 구동기 내에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게 제공되며, 상기 제1브래킷과 결합되는 **제1** 이동축(이하 '구성요소 5-3'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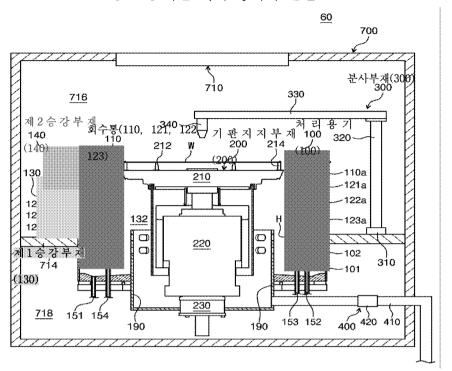
상기 제2승강부재는 상기 제1브래킷에 고정 결합되는 **제2구동기**(이하 '구성요소 6-1'이라한다); 상기 제2구동기의 상부에 제공되며 상기 일부의 회수통과 결합되는 **제2브래킷**(이하 '구성요소 6-2'라 한다); 및 상기 제2구동기 내에서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제공되며, 상기 제2브래킷과 결합되는 **제2이동축**(이하 '구성요소 6-3'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기판 처리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5】, 【청구항 9】, 【청구항 11】 【청구항 12】: 기재 생략 【청구항 6】~ 【청구항 8】, 【청구항 10】: 각 삭제

# 6) 주요 도면

<sup>3)</sup>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브래킷'으로 표기되고, 선행발명 1에서는 '브래킷'로 표기되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의하면 '브래킷'이 올바른 표기이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브래킷'으로 고쳐 표기한다.

[도 3] 기판 처리 장치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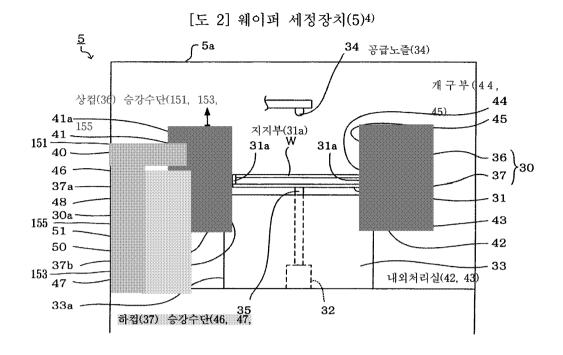


### 다. 선행발명

## 1)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2006. 5. 1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582208호에 실린 '기판처리장 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1에서 기판처리장치(5)는, 기판을 지지하는 홀더와 상기 기판의 표면에 복수의 처리액을 공급하는 노즐(34)과 상기 홀더의 주위에 설치된 용기(30)를 구비하고; 상기 용기는 복수의 처리실(42, 43)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처리실은 다단으로 설치된 개구부(44, 45)를 갖고; 상기 홀더가 지지하는 기판 주위에 상기 각 처리실의 개구부를 각각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홀더와 상기 용기가 상대적으로 승강이 자유롭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청구항 1, 요약, 도 2 참조).



### 2) 선행발명 2(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

2004. 9.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4-265910호에 실린 '기판 처리액의 분별 회수장치 및 해당 장치를 구비한 기판 처리 장치와 기판 처리액의 분별 회수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발명의 목적이 다르다. 구성면에서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복수의 회수통 전체가 제1 승강부재 하나에 의하여 승강하되, 복수의 회수통 중 일부가 제1 승강부재에 고정결합된 제2 승강부재에 의하여 나머지 회수

<sup>4)</sup> 웨이퍼 세정장치(5)는 선행발명 1의 기판처리장치(5)와 동일하다.

통에 대하여 상하 방향으로 상대 이동하나, 선행발명 1에서는 하컵(37)과 상컵(36)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별개의 실린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승강하므로 선행발명 1에는 제 2승강부재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용효과 면에서도, 선행발명 1은 하컵(37) 구동을 위한 실린더(47)와 상컵(36) 구동을 위한 실린더(153)가 항상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비하여 제어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 대비

####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1	내부에 기판을 세정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처리 용기	케이싱(5a) 내에 중앙으로 설치되어진 고리
		형태의 용기(30)
		(6면 3문단, 도 2)
2	상기 공간 내에 제공되고, 기판을 지지하 는 <b>기판 지지 부재</b>	용기(30) 내에 수납되고 기판을 지지하는
		지지수단(홀더)
		(6면 3문단, 도 2)
3	상기 기판 지지 부재에 놓여지는 기판으	웨이퍼의 표면에 APM 및 순수를 공급하는
	로 복수의 처리액을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공급노즐(34)
	분사 부재	(6면 3문단, 도 2)
4	상기 처리 용기는 상기 공간 내 처리액이	용기(30) 내를 <b>내처리실(42)과 외처리실(43)</b>
	유입되는 입구가 상하 방향으로 적층된	로 하도록 복수(2개)의 처리실로 하고, 내처
	복수의 회수통;	리실(42)의 개구부(44)와 외처리실(43)의 개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구부(45)가 다단으로 설치됨
		(6면 4~5문단, 도 2)
5	상기 복수의 회수통 전체를 상하 방향으	하컵(37)을 승강시키는 수단
	로 이동시키는 <b>제1승강부재</b> ;	(6면 5문단 후단부, 도 2, 4)
	상기 제1승강부재는, <b>제1구동기(5-1)</b>	하컵을 상하로 움직이는 <b>실린더(47)</b>
		(6면 5문단 후단부, 도 2, 4)
	상기 제1구동기의 상부에 제공되며 상기	하컵(37)의 외주면에 결합된 <b>브래킷(46)</b>
	처리용기의 외벽에 결합되는 <b>제1브래킷</b>	(6면 5문단 후단부, 도 2, 4)
	(5-2)	(OC 3CC +C+, x 2, 4)
	상기 제1구동기 내에서 상하로 이동 가	실린더(47) 내에서 상하로 이동 가능하며
	능하게 제공되며, 상기 제1브래킷과 결합	브래킷(46)에 접속된 <b>피스톤로드(48)</b>
	되는 <b>제1이동축(5-3)</b> 을 포함	(6면 5문단 후단부, 도 2, 4)
	상기 복수의 회수통 중 일부의 회수통을	
	나머지 회수통에 대해 상하 방향으로 상	외처리실(43)의 개구부(45)로 작용하는 상컵
6	대 이동시키는 <b>제2승강부재</b> 를 포함하고;	(36)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수단
	상기 제2승강부재는 상기 제1승강부재에	(6면 5문단 전단부, 도 2, 4)
	고정결합	
	상기 제2승강부재는 상기 제1브래킷에	상컵(36)을 상하로 움직이는 <b>실린더(153)</b>
	고정 결합되는 제2구동기(6-1);	(6면 5문단 전단부, 도 2, 4)
	상기 제2구동기의 상부에 제공되며 상기	상컵(36)의 외주면에 결합된 <b>브래킷(151)</b> (6 면 5문단 전단부, 도 2, 4)
	일부의 회수통과 결합되는 <b>제2브래킷</b>	
	(6-2);	C 0EC ECT, A 2, 4)
	상기 제2구동기 내에서 상하로 이동 가	브래킷(151)에 접속된 실린더(153)의 <b>피스</b>
	   능하게 제공되며, 상기 제2브래킷과 결합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되는 <b>제2이동축(6-3)</b> 을 포함	(6면 5문단 전단부, 도 2, 4)
	기판 처리 장치	을 포함하는 기판처리장치(5)

### 2) 공통점: 구성요소 1 내지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처리 용기)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용기)는 모두 '내부에 기판을 세정처리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용기'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기판 지지 부재)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지지수단)는 모두 '세정처리 용기 내에 있으면서 기판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분사 부재)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공급노즐)는 모두 '기판에 처리액을 분사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4(복수의회수통)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복수의 처리실)는 모두 '세정처리 용기는 복수회수통(처리실)으로 구성되되, 처리액이 유입되는 각 입구가 다단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각각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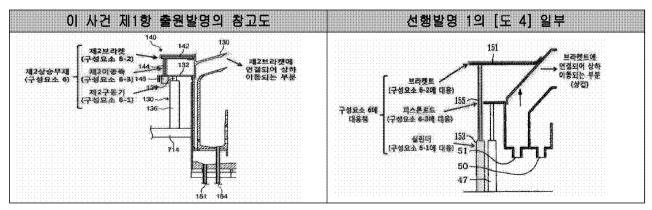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의 대비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제1승강부재)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요소(하컵의 승강수단)는 모두, 회수통(하컵)이 그 외벽에 설치된 제1브래킷[브래킷 (46)]을 통하여 제1구동기(실린더)의 제1이동축(피스톤로드)과 결합한 것으로서, 제1구동기(실린더)가 제공하는 동력에 의하여 제1이동축(피스톤로드)이 상하로 이동함에 따라 회수통(처리실) 전체가 승강한다는 점에서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

#### 3) 차이점: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복수의 회수통(처리실) 중 일부 회수통(외처리실)의 상단 덮개부(상컵, 위 각 도면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가 그 외벽에 설치된 제2브래킷[브래킷(151)]을 통하여 제2구동기(실린더)의 제2이동축(피스톤로드)과 결합한 것으로서, 제2구동기(실린더)가 제공하는 동력에 의하여 제2이동축(피스톤로드)이 승강에 따라 상단 덮개부(상컵)만이 승강하면서 일부회수통(외처리실)의 개구부를 개폐한다는 점에서는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6에서는 제2승강부재가 제1승강부재에 고정 결합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에서 상컵의 승강수단은 하컵의 승강수단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의 대비

##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제2승강부재가 제1승강부재에 고정결합, 즉 제2구동기가 제1승강부재의 제1브래킷에 고정결합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상컵(37)의 승강수단인 실린더(153)가 하컵(36)의 승강수단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하컵의 승강수단인 실린더(47)의 외측에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모두 제2구동기(실린더)의 구동이 제2이동축(피스톤로드), 그리고 제2브래킷[브래킷(151)]을 통하여 제2브래킷[브래킷(151)]에 연결된 일부의 회수통(외처리실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상컵)의 이동을 제어하는 것으로, 제어의 전달 구성과 제어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그와 같은 제어에 의하여 일부의 회수통(외처리실)의 개폐를 조작한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낸다.

또한, 선행발명 1의 실린더(153)의 위치를 실린더(47)의 외측에서 하컵 외주면의 브 래킷(46)으로 변경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선행발명에 그러한 변경에 장애가 되는 기재가 없고 위와 같이 변경되더라도 선행발명 1의 동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변경 전후에 모두 동일하게 상컵(36)과 하컵(37)의 상대적인 승강 동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단순히 제2구동기(실린더)의 설치 위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선행발명 1. 갑 제6호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3 특징은 상기 복수의 처리실은 적어도 제1의 처리실과 제2의 처리실로 이루고, 상기 용기는 제1의 처리실을 형성하는 동시에 제2의 처리실의 일부를 형성하는 제1의 부재와 상기 제1의 부재와 함께 제2의 처리실을 형성하는 제2의 부재로 구성되고, 상기 제1의 처리실은<sup>5)</sup> 제1의 개구부를 갖고 상기 제2의 처리실은<sup>6)</sup> 제2의 개구부를 갖고, 상기 홀더에 지지된 기판에 대하여 상기 제1의 개구부 및 상기 제2의 개구부를 이동시키는 상기 용기를 상기 홀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다. (4면 6문단)

본 발명의 제13 특징은 상기 제1의 부재와 상기 제2의 부재를 상대적으로 승강자유롭게 구성한 것이다. (5면 3문단)

용기(30)는 웨이퍼(W)의 주위를 포위하고 웨이퍼(W)의 표면에 공급한 APM 및 순수 등이 주위에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용기(30)는 제1의 부재로서 예를 들면 상컵(36)(천판(天板))과 제2의 부재로서 예를 들면 하컵(37)(기본체)을 구비하고 있다. (6면 4문단 전단부)

[청구범위]

청구항 13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1 부재와 상기 제 2부재를 상대적으로 승강이 자유롭게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처리장치.

2) 더욱이 선행발명 1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컵(36)과 하컵(37)이 서로 상대적으로 승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상컵(36)과 하컵(37)을 상대적으로 승강하게 하는 수단에, 선행발명 1에서 구체적으로 개시한, 상첩(36)과 하첩(37)을 각각 별개의 승강수단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승강시키는 구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상컵의 승강수단을 하컵 상단에 고정시켜 상컵을 승강시킴으로써 상컵의 하컵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조절하는 구성도 포함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 라.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구성요소 6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6은 '복수의 회수통 중 일부의 회수통의 개구

<sup>5)</sup>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을'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은'으로 고쳐 기재한다.

<sup>6)</sup>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을'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은'으로 고쳐 기재한다.

부를 열거나 닫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상컵(36)의 승강수단도 '외처리실(43)의 개구부(45)를 열거나 닫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 6과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구성요소 6의 대응구성이 선행발명 1에도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선행발명 1에서는 하컵(37) 구동을 위한 실린더(47)와 상컵(36) 구동을 위한 실린더(153)가 항상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는 일부의 회수통의 개폐가 제1승강부재(제1구동기)의 작동과는 독립적으로 제2승강부재(제2구동기)의 작동만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지므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비하여 실린더(구동기)의 제어가 복잡하고 제어 곤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일부의 회수통(외처리실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상컵)의 승강을 제어하 는 것으로서 전달 구성과 제어 대상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비하여 실린더(구동기)의 제어가 복잡하다거나 제어가 곤란한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이 제2승강부재를 제1승강부재에 결합함으로써 일부의 회수통이 제1승강부재의 승강에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인지, 선행발명 1과 같이 상컵의 승강수단을 하컵의 승강수단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상컵이 하컵의 승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 는 구성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인 '약액 처리시 발생되는 퓸의 외부 유출 억제' 및 '약액 처리시 발생되는 퓸에 의한 회수통의 오염 방지'는 선행발명 1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목적인 '약액 처리시 발생되는 품의 외부 유출 억제'는 일부 회수통(이동 회수통)의 열림 동작을 통해 달성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도 아래와 같이 '처리실의 열림 동작을 통해 약액의 외부 확산을 방지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도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된다.

제1의 배출회로(50)을 통하여 내처리실(42)의 실내분위기를 외부에 배기한다. 이때 개구부(44, 45)가 열리고 컵 개구면적을 넓게 잡고 내처리실(42), 외처리실(43)을 통하여 배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배기량을 많이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약액(APM) 분위기의 외부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1의 배출회로 (50)을 통하여 내처리실(42) 내에 비산한 APM을 배액한다. [이하 생략] (갑 제6호증 9면 3문단)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다른 목적인 '약액 처리시 발생되는 품에 의한 회수통 오염을 방지'는 이동 회수통의 닫힘 동작을 통해 달성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 아래와 같이 '처리액별로 처리실을 달리하도록 기판 주위에 별개 처리실의 개구부를 이동시킴으로서 다른 처리액과 혼합을 방지하고, 또한 상컵이 외처리실의 뚜껑(천판)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이 미루어 보아 선행발명 1에도 외처리실의 닫힘 동작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위와 같은 목적역시 이에 의하여 달성된다.

예를 들면 복수의 처리액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액의 종류에 따라서 홀더에 지지되어진 기판의 주위에 별개 처리실의 개구부를 각각 이동시킨다. 그리고 각 처리를 실시하고 회로를 통

하여 각각 배액한다. 상기 배액되어진 각 처리액의 적어도 하나의 처리액을 노즐로부터 다시 기판의 표면에 공급하고 재이용을 도모한다. 여기에서 각 처리액이 각 회로 내에 각각 남아 있어도 처리액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실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처리액이 같은 회 로 내에서 혼재하지 않는다. (갑 제6호증 2문단)

웨이퍼(W)의 주연에 이동하는 내처리실(42)의 개구부(44)와 웨이퍼(W)의 주연에 이동하는 외처리실(43)의 개구부(45)가 다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상컵(36)은 최상단의 개구부(45)의 상연이 되는 천판으로서도 기능을 갖는다. 상기에서 상컵(36)에는 상기 외주면에 브래킷(151)이 설치되고 상기 브래킷(151)에 실리더(153)의 피스톤로드(155)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실린더(153)을 가동시키는 것에 의해 상컵(36)을 승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갑 제6호증 6면 5문단)

####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5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와 동일하고, 구성요소 6과 그 대응구성요소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할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